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 토론회

통일한국을 위한 실천적 과제 I

2016 **11/3** (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목 차

환영사	이 정 현 당대표·여의도연구원 이사장	4
인사말	정 종 섭 국회의원·여의도연구원 부원장	5
축 사	김 광 립 국회의원·정책위의장	6
	홍 용 표 통일부장관	7
개회사	박 영 근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	8
좌 장	오 경 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발 제	『김정은의 성공한 도박 되물리기 : 북한 비핵화!』 이 흥 종 부경대학교 교수	13
	『통일대비 남북한 표준화 통합방안』 김 진 호 공주대학교 교수	31
종합토론	윤 여 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45
	이 인 배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51
	정 중 재 충북대학교 교수	59
	안 종 찬 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65

환영사



새누리당 당대표 · 여의도연구원 이사장
이 정 현

‘통일한국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의도연구원, 정종섭 의원님, 그리고 오늘 토론을 이끌어 가실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 아마도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거기에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SLBM까지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존속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기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잇따른 위협 앞에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의 헌법 정신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정치와 경제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고, 탈북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탈북민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람의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남북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당면한 북핵 위기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북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표준화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이라는 공포의 무기를 녹이고 문화적 통합의 쟁기를 만들어내는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새누리당 당대표 **이 정 현**

인사말



국회의원 ·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정 종 섭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발효된 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노동에 준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 등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개발에만 몰두하는 사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엘리트층 고위인사도 릴레이 식으로 탈북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북한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통일한국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적기입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북한 스스로 개혁 · 개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는 여 · 야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 마다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의 DNA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회를 맡아주신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부경대 이홍종 교수님과 공주대 김진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통일한국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기를 바랍니다. 통일 문제는 초당적 사안으로 여 · 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정 종 섭**

축사



국회의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 광 립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광림입니다.

국내 최초의 정당정책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통일한국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통일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일대한민국을 위해 각종 연구와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님,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뜻 깊은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자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정중섭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실전배치 등으로 전 세계를 향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방위적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이끌며 이러한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변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까지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분단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남북의 주민들은 지난 시간만큼이나 깊은 문화적, 심리적 거리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에서부터 언어, 생활습관, 풍습에 이르는 수많은 차이들이 오해와 갈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청년세대의 인식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서부터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일의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간 소통의 노력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소통의 장을 찾고,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한반도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에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金光琳**

축사



통일부장관
홍 용 표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입니다.

‘통일 한국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님과 정중섭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북한 주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냉철한 현실인식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국가적 역량 결집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통일 한국을 향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통일부장관 **홍 용 표**

개회사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창원대학교 교수
박 영 근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영근입니다.

먼저 통일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핵문제 등 ‘통일한국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 있어 한반도통일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북한 핵을 억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될 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지난해 13년만에 핵 포기 선언을 한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전타격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이란의 핵 포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사전타격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부족할 뿐더러 국제사회에 한목소리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 및 경제제제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에게 전방위적인 외교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오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는 새누리당을 위한 통일세미나가 아닙니다. 정파를 떠나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법과 접근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준비는 국제적 지지 확보, 평화적인 방법, 경제적 대비, 사회문화적 갈등 완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통일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분단 70년의 아픔을 딛고 통일한국으로 재도약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에서는 통일대비 실천과제들을 중심으로 여러 학계의 도움을 받아 분야별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통일한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여의도연구원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 박 영 근

발 제

**김정은의 성공한 도박 되물리기
: 북한 비핵화!**

부경대학교 교수 이 홍 종

통일대비 남북한 표준화 통합방안

공주대학교 교수 김 진 호

김정은의 성공한 도박 되물리기 : 북한 비핵화!

부경대학교 교수 이 홍 종

김정은의 성공한 도박 되물리기: 북한의 비핵화

이홍중(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정치학박사)

<목차>

- I. 서론
- II. 통일/통합(integration)의 방법
- III. 북한의 비핵화
 - 1. UN 차원의 대북제재
 - 2. 국가별 양자 제재
 - (1) 미국
 - (2) 일본
 - (3) 한국
- IV. 결론

I. 서론

■ 2016년 10월, 북한, 미국 이어 중국 접촉

- 대북제재 논의 속 위기관리 나서... 美中, 北핵위협 가중에 북한발 위기관리 나설 가능성.
-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논의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고위급 관리가 북한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이 시기에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 결의안 논의가 미중간 기싸움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고위 관료가 북한을 방문...
-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북중 회의뿐 아니라 최근 북미간 접촉에도 응하면서 외교적 반경을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10

월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과 만나 북핵 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에 참여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 정부가 이번 회동에 대한 공식 보고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 추가적인 대북제재 부과를 앞두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과, 북한의 고도화되어가는 핵 능력 속 북한발 위기상황을 관리하려는 미국과 중국 등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

■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¹⁾

- 조선중앙통신은 공식 성명을 통해 5차 핵 실험이 성공적이었고,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방부는 본 핵 실험은 진도 5.0 규모의 인공 지진을 일으켰다고 파악되며, 추정 핵출력은 10kt 정도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는 "핵실험 위력이 최소 20~30kt(킬로톤)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운데 최고"라고 말했다.
- 2015년 2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2020년까지 북한이 많게는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2015년 12월 16일,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은 2020년까지 100 kt급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로동 1호 - 1993년
 대포동 1호(광명성 1호 탑재) - 1998년
 대포동 2호 - 2006년
 은하 2호(광명성 2호 탑재) - 2009년
 은하 3호(광명성 3호 탑재) - 2012년 4월
 은하 3호(광명성 3호 2호기 탑재) - 2012년 12월
 광명성호(광명성 4호 탑재) - 2016년
 화성10호“무수단” - 2016년 4월부터 8차례*3천-4천km 중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1월
 2016년 9월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G20,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단호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함.

II. 통일/통합(integration)의 방법

■ 통일/통합(integration)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능주의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인’ 것들로 통합을 추진하면 파급효과에 의해 ‘정치적인’ 것들도 통합의 방향으로 간다는 접근법이다. 남북경제교류, 스포츠교류 등을 하다 보면 신뢰가 쌓여 군축 등 정치적인 문제도 풀려 갈 수 있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둘째 연방주의는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비정치적인’ 문제들도 쉽게 해결된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대표적인 예가 연방주의를 채택한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셋째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 연방주의를 합친 접근법이다. 남북경제교류, 스포츠교류 등 기능주의적인 조치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다 어느 순간 정체되면 연방주의적인 조치인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등을 추진해야 남북관계가 계속 진척될 수 있다. 이것이 신기능주의이다. 소위 “피주기”라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은 기능주의적인 방식으로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신기능주의 방식인 ‘상호주의’로 넘어가야 한다. 강경정책으로 평가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포용정책이 필요하지만 잘못 진행된 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지원된 물품이 제대로 북한의 민간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검증이 안 되었다. 둘째 금강산관광비의 일부와 개성공단임금 전부가 달러로 전달되어 북한 독재정권의 비자금(핵무기 개발비 등)으로 되었다.

III. 북한의 비핵화

1. UN 차원의 대북제재

■ 2016년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결의안 2270호

- 유엔 결의안 2270호는 2016년 3월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월 3일 0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 결의안은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제재 결의로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
- 결의안 주요 내용: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 무기거래 ▷ 제재 대상 지정 ▷ 해상·항공 운송 ▷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 ▷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 대북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치가 다수 포함.

(1) 분야별 제재 도입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 판매에 대해선 「분야별 제재(Sectoral Ban)」가 처음 적용됐다.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다. 대(對)이란 제재와 달리 원유는 금수(禁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신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목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매와 공급을 금지.

(2)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캐치올 의무화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일절 금지시키는 전면적 무기 금수 조치를 취했다.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 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토록 했다. 캐치올이란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회원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

떤 형태의 기술 협력도 금지.

(3) 금융제재 및 운송 봉쇄

북한 은행이 제3국에 새로운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모든 거래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했다. 또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 단체를 처음으로 명시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북한발·북한행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으며,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기로 했다.

(4) 제재 대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경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한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32개(단체 20곳, 개인 12명)에서 60개(단체 32곳, 개인 28명)로 배 가까이 증가. 이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와 개인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해외 사무소는 폐쇄되며 북한인 대표는 추방된다. 아울러 제재를 회피하거나 어긴 북한 외교관과 정부 대표는 물론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제3국인)도 추방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

1993년	2006년	2006년	2009년	2013년	2013년	2016년
NPT 탈퇴	미사일 발사	제1차 핵실험	제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제3차 핵실험	제4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825호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 2016년 10월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규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일을 강력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10월 17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마친 후 언론 성명을 통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유엔

2) 민주평화통일회의. 2016.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2016년자문위원연수』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 북한은 지난 10월 15일 낮 12시33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 초만에 공중폭발하며 실패한 것으로 확인.

■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뭐길래? '송민순 논란'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문제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는 북한 내의 인권침해, 탈북민 문제, 납북자 문제, 식량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등의 포괄적 내용. 인권이사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과 갱신을 핵심으로 하는 비교적 간단한 문안으로 채택.
- 현재까지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유엔에서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주변국 방문이나 탈북민 면담 등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각각 제출.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채택되고 있다. 당시 결의 주도국인 EU는 첫 번째 북한인권 결의를 제안할 때,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하면서 북한의 인권, 인도적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도록 이 결의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정했고, 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 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침해의 상당 부분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북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제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강화된 내용의 북

한인권 결의를 지난 2014년 3월과 11월 각각 채택했다. 안보리로서도 2014년 12월 처음으로 '북한상황(situation in the DPRK)'을 의제로 채택해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

- 정부는 지난 2008년 제63차 유엔총회 결의부터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결의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최근 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적시한 노무현 정부 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싼 찬성, 기권 논란은 바로 직전 해인 2007년 11월에 일어났다.
- 정부는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다른 10개 이사국들과 함께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를 지지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6월 서울에 북한인권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올해 북한인권법 발효,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북한인권 침해 실태 파악을 비롯한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 국가별 양자 제재

(1) 미국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거래·관세·무역 등의 제한정책.

- 미국의 경제제재는 미국이 적성국에 사용하는 경제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상대국의 적대적 정책 및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 목적에 따라 ① 외교활동 제한조치, ② 경제관계 단절조치, ③ 무역 관련 조치, ④ 국제적 테러 행위 지원관련 조치, ⑤ 대공산권 제재조치, ⑥ 인권 관련 제한조치 등이 포함. 미국은 북한에 대해 위의 6가지 제재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음.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조금씩 완화되었는데, 1989년 1월 자산동결규정을 일부 완화했으며, 1989년 4월 식량·의약품·의료기재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수출을 허용. 보다 진전된 제재완화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보가 합의된 1999년 9월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이루어졌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유보하는 대가로 미국이 약속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행정부의 실무절차를 거쳐 2000년 6월 19일 발효.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미국

회사와 외국내 자회사를 통해 수출 및 재수출되는 대부분의 소비재 상품,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민감하지 않은 물자투입, 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 도로,항만,공항 등 하부구조와 여행,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북한인에 대한 미국인의 송금, 상업적인 미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민감하지 않은)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 미-북한간 상업 항공기 운항 등임.

- 계속 남은 제재조치들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미 군수품목록에 포함된 상품 및 기술 수출 금지, 이중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품 또는 기술 수출 금지, 대외원조법, 농업무역및 개발법, 평화봉사단법 및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원조금지, 국제금융기관의 대 북한 차관 지원 금지, 전리품의 이전 금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면제 금지,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인과 북한정부간의 금융거래 금지, 기업 또는 개인이 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요구 금지, 미사일 수출 등 비확산 관련 법규 및 민감물자 통제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 따른 제재 미 수출관리법 또는 무기수출통제법의 통제를 받는 상품의 개별적인 신규 수출승인 금지, 북한의 특정 실체와 미 정부간 계약체결 금지, 북한의 특정 실체가 생산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 이밖에 대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동결 된 자산에 대한 청구 금지 등.

■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를 대폭 강화하는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

-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세컨더리 보이콧³⁾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단체에 대한 제재로서 강력한 제재 효과.
-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여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 시 제재.
- 2016년 7월 7일,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북 인권제재를 발표. 김정은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최초 지정

■ 세 번째 연장안 발의된 미 북한인권법

- 샘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은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였었다. 미국 하원에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

3)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

장하는 법안이 발의.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⁴⁾은 앞서 2008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연장됐고 내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맡겼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이 만들었다.
- 2004년에 4년 기한으로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 2008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제 3국 내 탈북 난민 지원과 재정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그 동안 임시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였다.
- 2012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탈북자 복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지난 12년 동안, 미국 북한인권법의 가시적인 성과로는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정착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06년 5월, 탈북자 6명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10년 동안 모두 200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탈북 난민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탈북 난민들과 대북 인권단체 등은 탈북자들이 제 3국 수용소에서 미국에 오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탈북자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 특히, 서울에 있는 북한 인권 비정부 기구들, 주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라디오 방송국들 같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단체들에게 미국 정부의 지원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다.

4) 2004년 10월 4일, 미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 속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2004년 7월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처음 통과됐고 이어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돼 9월에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 법안이 다시 하원을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넘겨졌고, 10월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됐다.

- 미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내년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재의 북한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을 이어가고, 한반도 전역에 안정, 평화, 자유가 퍼지도록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계속 조명하는데 법안을 발의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2) 일본

■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등 인적 왕래 규제조치, 10만엔 초과 대북 송금 금지 등 대북제재 추가.

■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權法)

- 2006년 6월 23일 공포.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주로 일본인 납북문제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그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전문 7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3) 한국

■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은 기능주의적인 방식으로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신기능주의 방식인 '상호주의'로 넘어가야 한다. 강경정책으로 평가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한반도신뢰프로세스)은 상호주의 방식.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중단(2016. 2. 10), 북한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의 강력한 대북제재(2016. 3. 8) 발표.

- 1)금융제재: 제재 대상 단체, 개인 지정, 국내 기관/개인과 금융거래 금지
- 2)해운제재: 북한기항 제3국 선박 국내 입항금지, '국적세탁' 선박입항 불허
- 3)수출입통제: 북한산 물품의 국내반입 금지 강화
- 4)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제도: 북한 해외 식당 이용 자제 권고

■ 2016년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

- 북한 인권법(北韓人權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 법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5년 8월부터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공포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제대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
- 2016년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기 위해 신설됐다.

3. 대북제재의 효과

■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전체 교역의 80% 이상
-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
- 중국은 유엔 차원 아닌 국가별 양자 제재 반대

■ 북한의 대외경제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

- 무기수출 감소, 위조화폐·위조담배·마약 등 불법행위 외화벌이 감소.
- 金正은의 비자금
- 장마당경제

■ 금융제재와 대북심리전(한류 포함)

IV. 결론

■ “남으로 오시라!”(regime change로의 변화 확실하게)

-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 최근 북한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과 의도를 외교적 수사의 애매함 없이 과감하고 직설적으로 표현.
-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서 정권안정을 이루겠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북한주민에게는 참혹한 인권탄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올 것을 권고. 그러면서 우리 내부를 향해서는 북한 내 우발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안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
- 대통령 발언으로서의 파격성과 단순한 논리가 주는 명쾌함 때문에 그동안 북핵문제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답답해하고 좌절감을 갖게 된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실제로 북한에서도 간접적으로 문의.
- 2016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거듭 권유하고, 대내적으로는 북한 인권개선에 국론을 결집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아세안·러시아 등 해외자문위원과 '통일 대화' 시간을 갖고 북한을 지옥으로 묘사하며 김정은 정권의 인권상황에 대해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지옥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국내에서 북핵·미사일 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압박 일변도'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박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포기와 생존'을 놓고 양자택일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은 핵포기를 거두지 않고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이어 간다는 분위기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인권 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며 핵포기를 거듭 압박하고, 북한이 버틸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 가져오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려 전한 것으로 해석.

■ 핵동결 vs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핵보유국 인정 vs 불인정)

- 북한의 경제·핵병진노선??

■ 대화협력에서 대화와 협력을 분리할 필요! 대화와 제재 병행!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전쟁 중에도 대화할 수 있어야...”

■ 선제 북폭? 북한체제 붕괴, 북한 접수
참수작전, 과도체제, 북한체제 붕괴, 북한 접수

■ 북핵 위협(對한국 vs 對미국)에 대비한 한미 협력체제 강화
cf. 중국

<첨부>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우리는 안보주권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10월 15일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 징후를 보인다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 일대 군사기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완전 불바다, 완전 폐허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냈다. 한국에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국의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선 "웨이진 쪽박"이라고 폄하하며 자신들의 군사 위협을 무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소위 '평화운동가'란 사람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불러온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지린(吉林)·산둥(山東)·랴오닝(遼寧)성 등에 배치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도발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수단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에 대한 사드배치는 국민생명과 국가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단이며 생존의 선택이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 사거리 3,000km급 이하 단거리 중,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요격할 수 있다. 고도 40~50km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직접 파괴는 물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MB)을 요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안보와 국익을 위한 필요한 대안이다. 물론 사드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군사적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이다.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후유증과 관련해 미국이 괌의 미군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사드포대를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했다. 전자파 측정을 실시한 결과 1.6km떨어진 곳에서 전자파 허용 기준치가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핵은 중국에 있어 ‘주변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불편한 문제이자 중국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불쾌한 문제’이지만 한국에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반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두고 중국이 “한국은 신중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대국논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시비에 대해 안보주권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대신 한국의 핵무장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금지하지 않는 농축과 재처리까지 만류하는 반(反)

확산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핵 그림자’를 앞세우고 도발을 일삼거나 남북관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북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핵개발의 퇴행적 노선을 포기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에 북한이 굴복했듯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도 국민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소식지 2016년 10월 30일>

통일대비 남북한 표준화 통합방안

공주대학교 교수 **김진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표준 통합의 필요성

2016. 11. 03

공주대학교

김진호
kjh@kongju.ac.kr

C/O/N/T/E/N/T/S

- 1 표준 이해와 중요성
- 2 남북한 산업표준 비교와 교류현황
- 3 통일을 대비한 산업표준통합 기본방향

표준 이해와 중요성



성명은 "시험분석 결과 폭발 위력과 핵물질 이용결수(계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과 일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규격화 → KPS(국가규격)
- 이용결수 → 참조표준

표준 이해와 중요성

표준은 인류의 문명형성과정에서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기술적 기준

국가표준기본법 (3조) 국가 3대 표준 분류

성문표준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또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준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술규격/지침/기술규정 (KS, KICS)

측정표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측정단위나 측정량의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측정방법, 표준물질, 측정시스템

참조표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

표준 이해와 중요성

삼성 갤럭시7의 셀 설계도에는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케이스 모서리부가 직각으로 설계돼 공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곡면부에 대한 설계가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셀의 젤리롤을 담는 케이스는 얇은 알루미늄 평판을 찍어 누르는 프레스링 작업을 통해 만드는데 작업특성 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서리의 곡면부에 대한 설계값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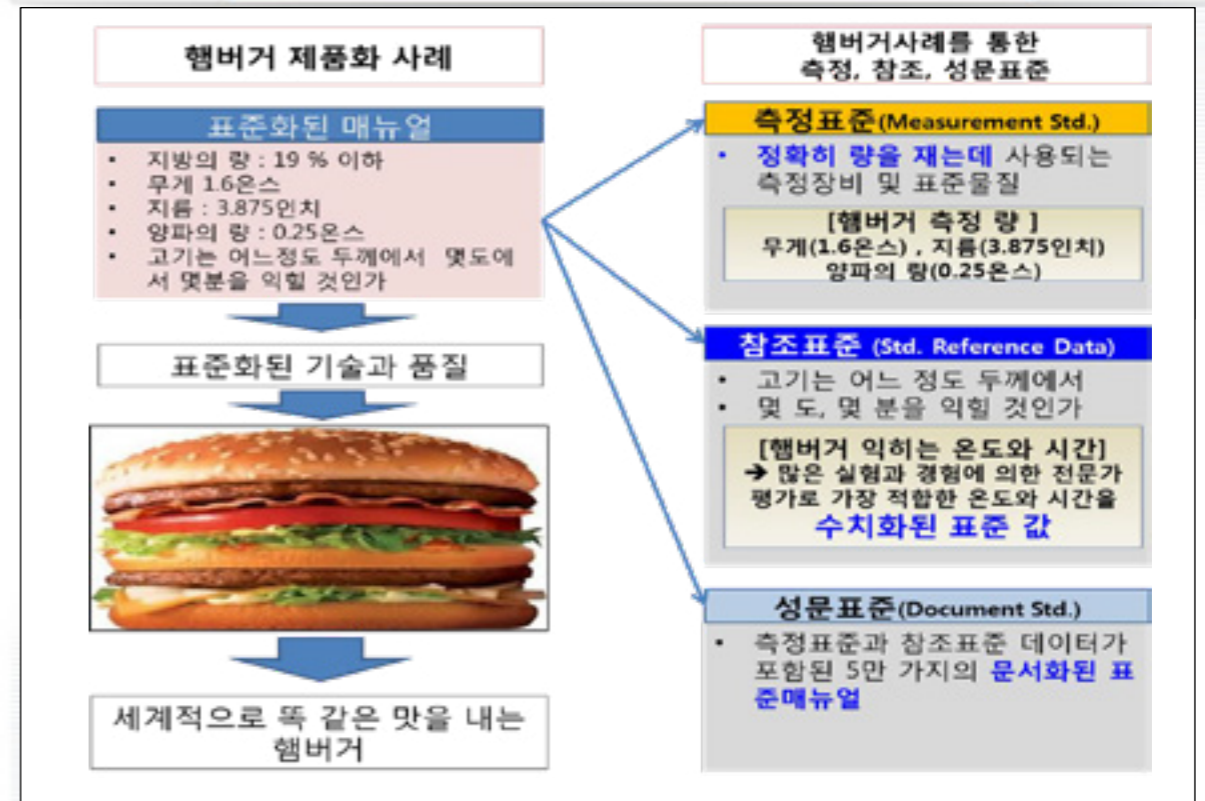
이 사실은 지난 9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삼성전자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상의 삼성SDI와 ATL의 정상 배터리 제품들을 비교한 CT촬영 사진에서 드러났다는게 정의원의 설명이다.

(16년 10월 12일 뉴시스)

- 설계값 → 참조표준



표준 이해와 중요성



표준 이해와 중요성

국제적 무역환경의 변화

수입규제 방법

WTO 협정 체결 전

- 관세
- 보조금 및 쿼터제

정책, 정치적 규제

WTO 협정 체결 후

- 기술규정 및 표준
- 적합성 평가

기술적 규제

중국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814건에서 2009~2016년 1675건으로 늘었다. 중국 보호무역의 90%는 TBT와 SPS 부문에서 이뤄졌다. 특히 중국은 '차이나 스탠다드'(중국표준)를 앞세워 보호무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EBN, 16/10/21)

WTO 중요한 협정 : TBT 협정 & SPS 협정

표준 이해와 중요성

[ICT포럼코리아 2013]'충성없는 표준전쟁'..우리나라 ICT 표준 질적 성장 필요하다

1970년대, VTR의 재생 방식을 둘러싸고 소니와 마쓰시타의 10년에 걸친 뜨거운 전쟁이 벌어졌다. 동영상이나 화면 선명도 모두 소니의 '베타' 방식이 우위였다. 하지만 마쓰시타가 기술공개 등을 통한 호환성 확보 전략을 구사하면서 세계 표준은 마쓰시타의 VHS 방식이 차지했다. 덕분에 마쓰시타는 연 2조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벌어들였지만, 베타 방식은 VHS 시장에서 퇴출됐다.



국제 산업계의 표준 선점 경쟁은 '충성없는 전쟁'에 불릴 정도로 치열하다. 표준 기술을 선점하면 그 분야의 기준을 동종 기업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소니와 마쓰시타의 사례처럼 우순한 기술여라도 표준 전쟁에서 실패할 경우 시장에서 사라져버리기 쉽다.

○한국 ICT 표준, 질적 도약 필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2일 서울 코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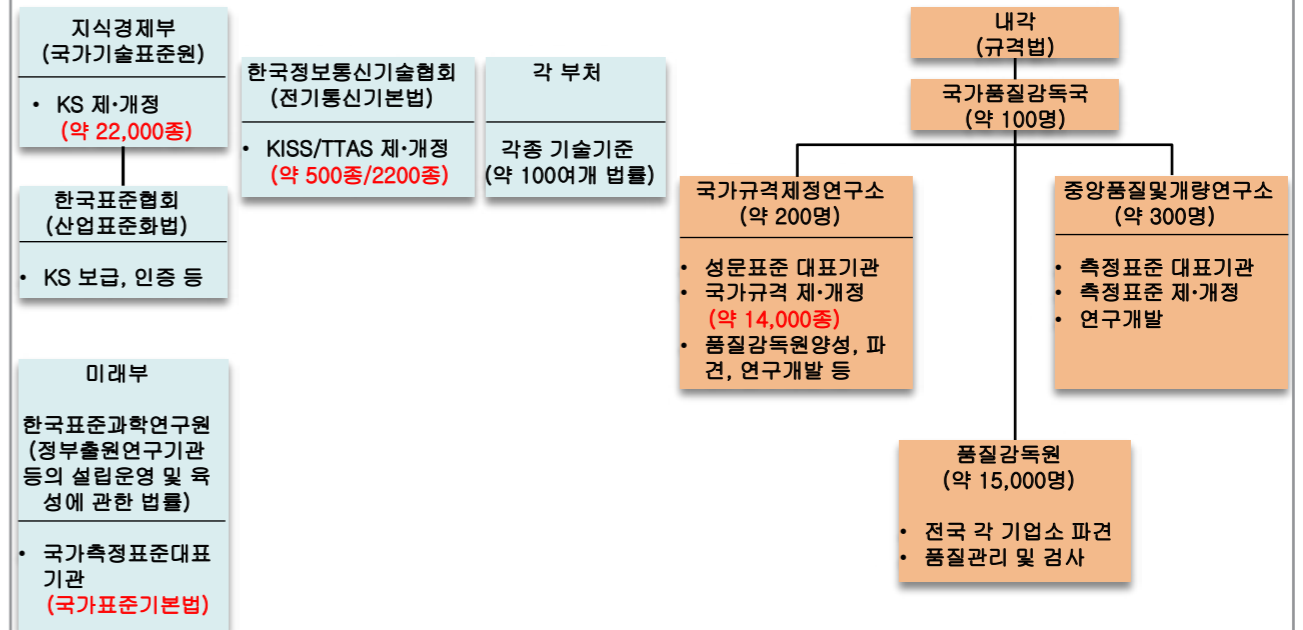
표준은 생존이나? 퇴출이나? 공생이나?

전력산업 '통일 이후' 비전 마련 나서

전기전용화-전기공사협회
표준은 생존이나? 퇴출이나? 공생이나?
전력산업 '통일 이후' 비전 마련 나서

남북 산업표준 비교/교류현황

남북 표준체계 비교



남북 산업표준 비교/교류현황

북한의 국제협력 현황

- ISO/IEC 외에는 국제활동 실적이 없음
- 인정/법정계량 분야에서도 동일
 - ⇒ 국제화를 위한 상당한 준비가 필요
- 측정표준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대로 필요
- 숙련도시험, 공인시험검사소 평가, 인증기관 평가 등 보이지 않은 표준체계 필요

우리나라의 측정표준은 세계 5~6위권

분야	국제기구명	남한	북한	비고
측정표준	CGPM (국제도량형총회: 미러협약)	1959	1982	회원자격 상실
	APMP(아시아태평양계량과학기구)	1980	2001	2002년, 2004년 총회 참석
	COOMET (유라시아측정표준기관협회)	해당없음	2002	준회원
표준화	ISO (국제표준화기구)	1963	1963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1963	1963	
	IAEA (국제원자력기구)	1957	1974	
인정기구	ILAC	2000	미가입	
	APLAC	1998	미가입	
	IAP	1991	2002	회원자격상실
	PAC	1995	미가입	
법정계량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1978	1974	통신회원
	APLMP	1999	2000	

남북 산업표준 비교/교류현황

규격와

- (2002) 남북 산업표준 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 (표준협회주관, 아래 표)
 - 북한: 남북표준협력사업 필요성 공감
 - 북한의 표준규격 현황 파악
 - 수요조사: 용어와 기호 통일 호소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상)
 - 중: 중국표준화협회, 연변대, 심양 질량감독국, 심양 615봉사소, 베이징 인터넷사
 - 북: 민경협 단동 대표부
 - 일: 조총련 과학기술협회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2002	남북 산업표준 교류협력 기반조성	북한산 광공업제품의 호환성 연구, 북한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2003	남북 산업표준 교류협력 기반조성	해외수출 북한상품의 품질실태조사 및 남한 제품과의 성능비교
2004	남북 산업표준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한 산업표준 통합시나리오 개발과 IT 분야 규격 체계정 방안 연구
2005	남북 산업표준 교류협력 활성화	산업표준협력과제 도출, 과학기술 표준분야의 대폭협력 방안 및 사례연구
2006	남북 산업표준 통합화 기반조성	개성공단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2005) 협력담당 창구 결성
 - 남북표준포럼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남북 산업표준 비교/교류현황

측정표준

- (1992)남북한 한글 로마자 표기법 국제표준 합의
- (1994) 남북한 국가표준제도 현황조사
 - 중앙계량과학연구소와 접촉
 - 나진-선봉지역에 “표준센터” 설립 제안
- 수출입 증대로 측정표준 교류 절감
 - PTB 협력사업 추진(2003년 양해각서)
- 표준시간 방송주파수: FM -> AM (남북 협의 중)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1994	남북한 국가표준제도 현황 조사	과총
1996	국가표준통합을 위한 남북현황 비교 및 전략연구	과학기술처
1998	국유지계량표준현황 조사	과학기술처
1999	나진-선봉지역 표준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과학기술부
2000	남북표준협력 사전조사 연구(Ⅰ)	기본사업
2001	남북표준협력 사전조사 연구(Ⅱ)	기본사업
2002	남북표준협력 사전조사 연구(Ⅲ)	기본사업
2006	남·북한 측정표준 단계별 통합화 추진전략	기본사업

남북 산업표준 비교/교류현황

규격와

- 남북한 규격특성 비교
 - 전기분야 KS와의 유사성 30%, 나머진 대응규격 없거나 비유사

남한 (KS)	북한 (KPS)	구분	남한	북한
입력규격	강제규격	산업용어	드라이버	나사못
합의제 성격의 규격	실무자 중심의 규격	이연(이연) 케이블	이연(이연) 케이블	이연(이연) 케이블
일반적통합적 규격	구체적 제품에 대한 시행서 측면의 규격	전기도면기호(계량)	AC 208V 50Hz	DC 28V
		방송용 전계	NTSC	FAL
		TV전계방송 방식	NTSC	FAL

- 표준/규격 용어 통일 시도
 - 기본규격(KSA), 전기분야(KS C) 대상: 남북 국가규격 용어사전 발간 실패
 - 북: 심양파견 국가품질감독국
- 남북 공통의 정보산업용어 표준안 마련(2003)
 - 북: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족화해협의회, 교육성 프로그램센터, 국가품질감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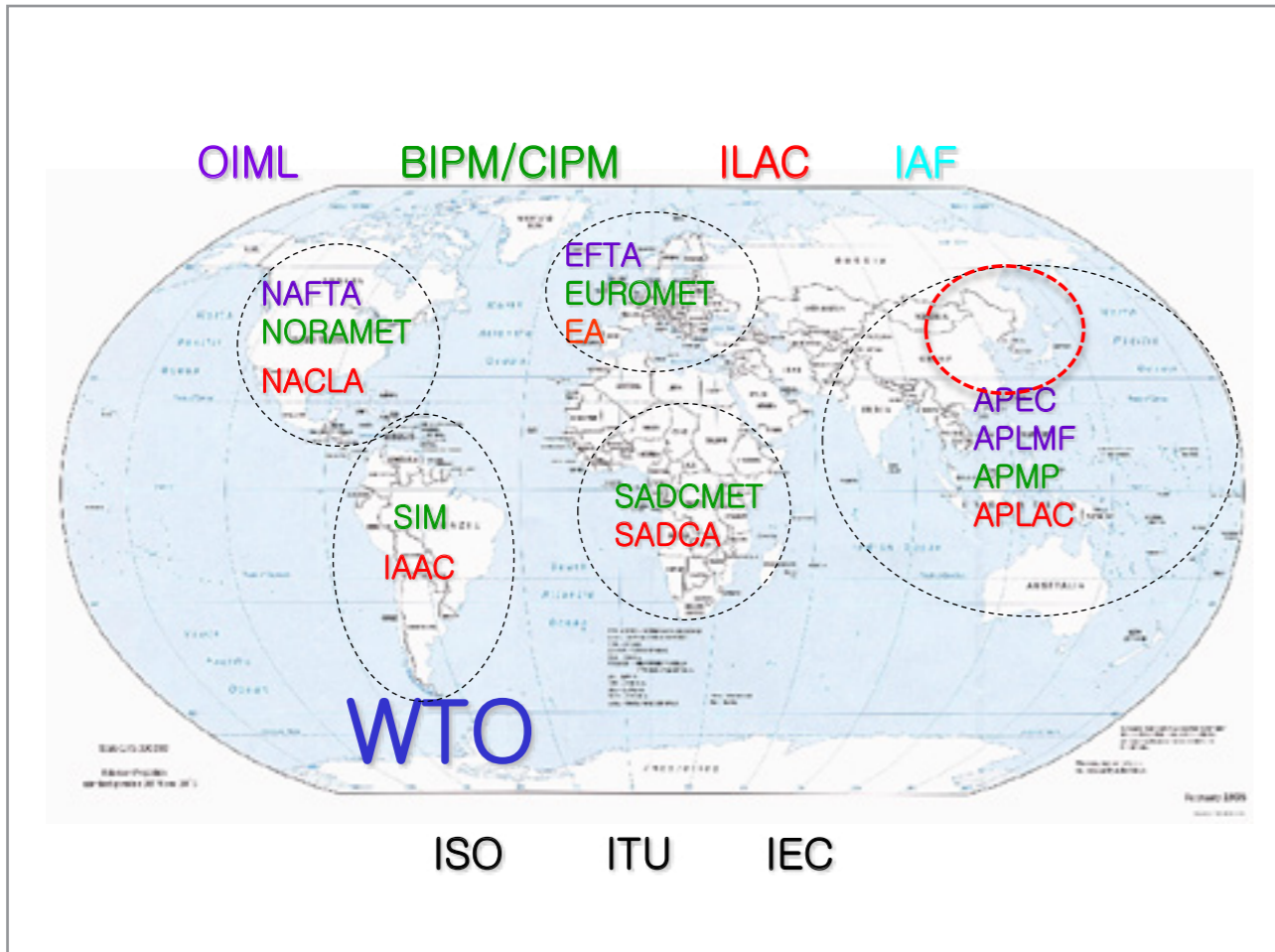
남북 산업표준 통합 기본방향

남북 산업표준 통합의 필요성

- 선진국 진입을 위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
 - 국제 상품교역의 80%는 표준의 영향 (OECD 보고서 인용 - 34대 미 상무부 장관 Donald Evans ('01~'05))
 - 표준이 독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DIN 보고서) - 자본(48.5%), 표준(27.3%), 라이선스(15.2%), 노동(6%), 특허(3%)
 - EU 총 무역량의 76%는 표준의 영향('99, OECD 보고서) - 21%는 강제표준(규제기준)의 영향



용어와 기호 통일 호소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상)
 독일 사례를 보면 비표준화에 따른 통일비용은 전체 통일비용의 8%~17%를 차지



남북 산업표준 통합 기본방향

북 접촉시 고려사항

- ① 표준체제 투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 국가적 표준체계 구성, 국제화 필요성 인식
- ②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 국제기구 활용
- ③ 남북 표준체계 통합을 위한 전략수립 시급히 필요
 -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
 - 표준 불일치에 의한 손실비용: 13조~210조
 - 인력손실: 3~4%, 자체손실 2~3%, 생산성 저하 3~10%

남북 산업표준 통합 기본방향

남북 산업표준 통합의 필요성

- 남북 통일 비용 절감
 - 비 표준화로 인한 손실(인력, 물자, 시간, 생산성 저하 등)은 통일비용의 최저 8%(13조)에서 최대 17%(210조)로 추정됨
 - 남북 표준 통일을 위한 사전준비는 통일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표준분야는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남북 경제협력 촉진
 - 남북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고 산업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남북 경제협력사업 수행 시 불편함이 현실적으로 나타남
 - 상품 및 재화의 이동을 위한 통관절차, 결제방식, 하자보수 등의 문제
- 비정치적인 분야의 확산
 - 산업표준 통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언어, 문화, 관습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남북 산업표준 통합 기본방향

통합 방안

<산업표준 통일과 단계>	<산업표준 통합과 추진과제>
1단계 : 상호교환	남북한 표준 상호 교환
2단계 : 상호인지	남북한 규격 비교 연구 -부분별 산업표준 비교 -부분별 산업표준 용어 비교
3단계 : 상호협치	국제규격 기준 제정 협의 -남북한 신규규격 협의체 구성 -부분별 기준 국제규격 결정
4단계 : 상호인증	상호 산업표준 인증 -북한이 ISO 인증 지원 -북한 품질인증 제도의 KS인증
5단계 : 상호통일	남북 산업표준 통합 및 보급

(남북산업표준통합기반구축, 한국표준협회, 2006)

민간 및 국제화

남북표준협력센터

- 표준체계 통합환경 분석
- 사전조사
- 전략수립
- 실행계획 수립
- 사업승인
- 예산확보 및 투입

표준, 과학기술의 핵심인프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남북산업표준통합기반구축, 한국표준협회, 2006
북한의 측정표준 능력향상 및 국제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2

종합토론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윤 여 상
-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이 인 배
- 충북대학교 교수
정 중 재
- 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안 종 찬

통일한국의 실천적 제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윤여상**

통일한국의 실천적 제언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1.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역할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남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격변이 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단비용을 고민하면서도 통일비용을 염려하고, 통일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와 과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 한국사회의 역할과 역량에 국한해서 논의할 뿐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능력과 역량은 간과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사회가 개방되고 개혁정책을 실시할 경우 북한주민과 사회의 성장 잠재력은 현재화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역량과 역할을 제외하고 통일비용과 통일과정의 과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북한주민들은 통일한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써 북한사회의 재건과 청산작업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2. 통일과정 및 이후의 과제와 문제

통일은 정치, 행정, 법률 제도적 영역의 통합과 사회, 문화, 심리적 통합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현재 행정과 법률 제도적 영역의 통일준비는 정부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정부시기 통일대비 계획, 비상대비 계획, 급변사태 계획 등 통일과정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준비와 실행계획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통일은 정치 제도적 통일만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로 규정될 수 있는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통합과정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전후 과정에서 남북 갈등은 물론이고 북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실천 계획이 요구된다. 남북 갈등과 북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과 북북 갈등 해소를 위한 남북한 과거청산의 합리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사회는 지난 70여 년간 성분과 토대를 바탕으로 권력층과 일반 인민

간에 심각한 괴리 현상을 보여 왔다. 이것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 상호간의 심각한 갈등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북북 갈등은 통일한국의 난제가 될 전망이다.

둘째, 통일이전에 북한주민들의 삶과 인식을 한국사회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북한주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이 통일시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과거 쌀과 비료, 그리고 의약품 등을 제공해왔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 외에 북한주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선택을 돕기 위하여 자유와 외부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소식을 전달하고 한국사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리는 노력과 함께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실제 모습을 한국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은 서로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과정에 상호갈등과 반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가치체계와 행위규범, 인권실태, 사회의 전반적 실태를 한국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 북한인권 운동과 통일준비, 그리고 청산과제

현재 한국사회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과거에 대한 청산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전쟁시기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과 같이 한국사회의 남아 있는 과거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족 내부의 과거 불행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과거청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진상 규명과 청산작업은 과거의 부끄러운 사건들을 현재 시점에서 사실규명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을 실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정한 미래의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과거 진실규명 및 청산작업은 상호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중요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부끄러웠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그리고 유사한 희생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운동은 진실규명 운동이며,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운동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운동은 우리 민족 구성원의 미래와 통합적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건설적 통일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북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증대되면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거부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과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리문제는 회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예고된 현실이다. 북한 인권침해 행위의 청산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만족도가 낮고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경우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 처리의 주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피해자 집단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지식인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북한인권 문제 처리의 주체세력은 현재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만이 아니라 북한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인권 피해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시민의식이 형성될수록 북한 인권침해 행위의 처리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통일한국의 성공적인 운영은 남북한 모든 주민의 소망이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내적 통합이 없는 통일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과거청산은 통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며, 사회적 정의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 **이인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이인배(한반도미래포럼 기획이사/정치학박사)

I. 미국 조야의 선제공격 발언 사례

□ 최초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1. 6) 이후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SLBM, 무수단 미사일 등) 상황에서 4월 26일 독일 방문 중에 선제공격을 검토했음을 밝힘
 - CBS 토크쇼 '오늘 아침'의 공동 진행자 찰리 로즈와 인터뷰에서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destroy)할 수 있다" 다만 북한 공격에 따른 "인도주의적 대가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야 한다고 설명
- 이후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임
 - 4월 2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이런 행동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
 - 9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동맹국이나 정치권과)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
- 10월 12일 기자회견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아마도 그가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게 하겠지만 그러면 (그는) 바로 죽는다(and then immediately die)"

□ 전문가 그룹에서의 선제공격설

- 9월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 :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할 수 있다” “적이 위협한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 “미군은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대나 핵 실험장을 파괴할 수 있다”
- 10. 11 세계지식인포럼 덕 체니 전 부통령,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풀겠다며 계속 양보하다 보니 주도권이 그들(북한·이란)에게 넘어갔다"며 "북한은 이제 군사 행동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강조
-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한목소리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징후가 명확하다면 선제타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임(10. 11 VOA 인터뷰)
 - 벨 전 사령관(2006~2008)은 침략국이 공격을 개시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가 확인될 경우 주권국가에 의한 선제타격과 공격은 언제나 용인되고 확실히 필요
 -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2011~2013)도 멀린 전 합참의장의 관련 발언 지지
 - 존 킬리 전 사령관(1966~1999)은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도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아니다”

□ 선거 캠프에서의 선제공격설

- 클린턴 후보 진영
 -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후보는 정보 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깜짝 질문에 대해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답(10월 4일 미국 부통령후보 TV토론)
 - 웬디 서먼 전 국무차관,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괌에 핵 폭격기를 배치했으며, 동해에서 한미 해군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는 등 육해공군을 아울러 한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10월 11일 세계지식 포럼)
 - 캠벨 전 차관보 “우리는 북한 이슈가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시

급한 문제라고 말해 왔다”며 “우리는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 놓지 않을 것”(10월 11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토론)

○ 트럼프 진영

- 후크스트라 전연방하원 정보위원장 “중동이나 한반도, 러시아 등 어느 곳에서라도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것”(10월 11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토론)
-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NI) 국장, "(북한에 대해) 뭐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나라" "(북한의) 현 체제를 앞으로도 오래도록 존속시켜선 안 된다"발언(10월 13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과의 인터뷰)

II. 미국발 선제공격설의 배경과 가능성

□ 선제공격설 제기의 배경

-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공격설은 부시 정부와 달리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강대국 미국으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종이호랑이로 인식될 것에 대한 우려에 기인
 -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무시전략으로 일관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만 키움으로써 실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2014년) 과정에서 러시아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도 서방국가들과 함께 미온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수준에서 대처
 - 생화학무기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삼았던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러시아 지원)의 생화학무기 사용(8월)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선거캠프 양진영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발언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은 미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북한핵이 자국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 미국의 선제공격 실행 가능성

- 미국 조야의 언급은 이론적으로 ‘예방 공격’(Preventive Strike)이 아닌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에 해당. 이는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발사할 징후가 현존하고 명확할(clear and present) 경우만 공격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예방공격’은 적의 공격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 공격징후가 임박하고 명확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선제공격’과 다름. 예방공격을 국제법적으로 자위권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에 논란이 있음
 - * 1993 영변 핵시설에 대한 Surgical Strike는 예방공격에 해당
-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떠한 식으로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 최근 미국 사회에서의 선제공격 필요성 주장은 차기 정부에게 북핵문제 해결의 긴박성을 알리고, 조속히 해결책을 세우라는 탄원 성격이 강함
 - 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6개월 이상의 북한 문제에 대한 검토 시간을 가짐. 국무장관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곧바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2017년 하반기에 입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멀린 전합참의장의 발언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압력으로 해석 가능
 - 강경 발언 전후에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
 - 결국 미국의 진의는 [북한 핵 능력이 진전 ⇨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 고조 ⇨ 동북아의 불안정 고조 ⇨ 중국의 국가이익에 심대한 타격]의 수순으로 가기 전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해석
 - * 9월말 미외교협회(CFR)에서 발표한 “A Shaper Choice on North Korea—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에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내는 정책권고(recommendation) 첫번째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확보하라. 두번째,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freeze) 시작과 함께 비핵화와 포괄적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등의 협상틀을 제시하라 등임.(프로젝트 총책임자 Mike Mullen)

Ⅲ. 향후 북핵 정국의 장애 요인

- 한·미 양국이 선거정국 돌입으로 북핵 해결 행위자 입지 약화
 - 미국의 11월 대통령선거와 한국의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하여 북핵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정책 결정자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
 - 향후 2017년은 미국의 대북정책 준비기간 및 한국의 대선정국으로 인하여 북한으로서는 핵능력 제고의 절호의 기회가 될 상황
- 따라서 올해 내 북한의 핵진전 동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나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제의는 불가능
 - 제재 국면에서 돌연 대화제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로 인식될 것인 바, 북한의 사기만 높여주는 꼴

Ⅳ. 북한 핵위협 대응 방안

□ 북한을 갇에서 위로 위치 전환 정책 추진

- 현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전략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갇에서 위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환
 - 현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갇의 입장인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 농후
 - 이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중요
- 미국의 3자제재가 가시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유엔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적극적인 제재 방안 마련 한계. 따라서 개별제재를 통한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기류
- 선제적으로 한국도 3자 제재를 위한 조치 추진 필요

□ 제재의 이면 : 체제의 정당성 호도의 도구

- 제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직면할 경우, 북한은 제재를 받게 된 원인은 숨기고 제재 자체만 부각하며, 서방의 공화국 압살 책략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

었다고 변명

- 군사적 3축체제 + 체제 전환을 위한 3축체제 강화
 -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 예방공격을 위한 Kill-Chain, 공격에 대한 방어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전략 - KAMD
 - 체제 전환을 위한 3축 - 시장, 정보, 지하교회

- 실행가능한 군사옵션 모색
 -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여연시선 가을호에 한승주 장관 인터뷰에서 1993년 미국의 영변핵시설 폭격 시나리오는 실제로 검토된 적이 없었으나, NCND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

 -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나, 동맹인 한국으로 인하여 실행하기 어렵다는 뉘앙스

 - 실행가능한 군사옵션을 마련해야 할 것
 - 한반도에서의 핵피해 없으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며, 실행가능한 군사옵션을 마련해야

//끝//

통일 준비와 정치체제

충북대학교 교수 **정중재**

통일 준비와 정치체제

충북대학교 정중재 교수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걱정하면서, 통일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오늘 세미나의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일 준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일 통일추진 방안의 결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교육자의 몫이라 할 수 있으며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일 것입니다.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일을 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포기하면서 까지도 통일이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소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통일 직후 통일비용 부담이 있기는 하나 통일이 되면 국가의 세가 분명히 강해질 것입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대륙과도 그대로 이어지니 국력을 대륙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해양으로 나가던 과거와는 달리 대륙을 향해 우리의 꿈을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후 일자리 창출 분야도 광범위해지면서 최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문제도 통일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독일통일이 우리나라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과정에 얻은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걱정을 해야만 할 내용이 새로이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차 무디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시간에 지남에 따라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인과 정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서독주민에게 통일의식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는 질문에 대해 1957년에는 43%가 동의했는데 30년이 지난 1987년에는 0.5%만이 동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의 가능성을 믿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1957년에 60%가 1987년에는 3%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면 독일 보다는 통일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 이전 서독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중요도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분단된 지 45년만인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989년 5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철조망 해체와 동독국민들의 대거 탈출을 시작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10월 9일 라이프찌히 7만명의 시위대 집결, 10월 18일 호네커 축출 등을 통해 이듬해인 1990년 10월 3일 통일에 이르기까지 1년 5개월에 걸쳐서 평화롭게 그러나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서독정부가 협상을 완료한 안건이거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서독의회에서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시켜 통일에 대한 제도적, 예산상의 지원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과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독일과 같은 기회가 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의 역학구도에서는 통일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기민하게 뒷받침하기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의 능력부재로 인하여 통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당시 기민당(CDU)-기사당(CSU)-자민당(FDP) 연립정권의 내각책임제로, 의회의 다수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결 확보’라는 내각제의 장점을 작동시켜 통일 실현을 위해 연립정부에서 결정된 안을 의회에서 지연 또는 거부됨이 없이 신속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경우 어떠할까요? 우선 국회선진화법이 있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다수의 여당이라고 해도 법을 통과시키기 힘들고, 현재와 같은 소수 여당으로는 통일추진 과정에서 관련법과 예산을 통과시키기가 더 더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정치구도는 기존의 양당 중심 정치구도에서 다수당 정치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정당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의석구도가 정치의 일상화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른 국민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통일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헌법개정에 관해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며 6공화국 헌법이 작동하는 기간 동안에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고 선진한국과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한 틀을 다지며, 또한 통일 기회가 온다면 통일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치구도를 마련하는 헌법 개정을 희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한 예를 독일과 같은 내각책임제 헌법개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표준 통합 추진의 필요성

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종찬**

남북한 표준 통합 추진의 필요성

2016. 11. 03

안 종 찬

주제 ; 남북한 표준 통합의 필요성

- 표준통합의 필요성
 - EU경제통합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표준의 이해 ;표준의 종류
- 남북한 산업표준의 비교
 - 체계비교
 - 측정표준,산업표준,법정계량 현황비교
- 통합의 기본방향
 - 남북표준 협력센터 설립제안

남·북한 주요분야 국가측정표준현황

분 야	남 한(KRISS)		북 한(CIM)	
	표준기	정확도	표준기	정확도
길이(m)	옥소 안정화 헬륨 기본 레이저	10 ⁻¹³	옥소 안정화 헬륨 네온 레이저	10 ⁻¹¹
질량(kg)	kg 원기 3set, MI 저울	10 ⁻¹⁰	kg 원기 2set, 저울	10 ⁻⁹
시간(s)	광펄핑 세슘원자시계	10 ⁻¹⁵	루비듐주파수표준	10 ⁻¹¹
직류전압(V)	Josephson 전압표준	10 ⁻⁹	표준전지군	10 ⁻⁷
온도(K)	표준백금저항온도계	3×10 ⁻⁶	표준백금저항온도계	10 ⁻³

중앙계량연구소(CIM) 현황

- 설립 : 1950년 4월 12일
- 인원 : 약 320명
- 측정표준 유지현황
 - 약 100여개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을 유지
 - 외국 표준기관(중국의 NIM 등)에 소급성을 유지
 - 국가측정표준의 정확도는 남한의 국가교정기관(2차표준) 수준
 - 측정표준 활용을 위한 인프라 취약
- 국제관계
 - CIPM MRA에 미가입
 - CGPM 회원자격 상실 확실 및 10개 자문위원회 미가입

측정표준센터의 설립

□ 필요성

- 북한진출 남한기업에 국제수준의 측정표준 서비스(교정, 교육 등) 제공
- 북한의 측정표준 하부구조 개선
- 남북한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 KEDO 등) 지원

□ 사업내용

- 북한의 주요공단 및 남북경제협력사업단지에 측정표준센터 설립
- 북한의 중앙계량연구소(CIM)과 연계된 전국규모의 교정체계 설립
- 국가측정표준의 상호비교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right half of the pag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